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목 차

1. 구성개요
2. 활동결과
3. 주요 의안정리
4. 관련 보도자료
5. 특위위원명단
6. 별첨자료 ①
7. 별첨자료 ②
8. 별첨자료 ③
9. 별첨자료 ④
10. 별첨자료 ⑤

□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 구성목적

- 서울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한 헌법기관이자, 시 민대표기관, 최고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권, 예산 심의·확정권, 행정사무 감·조사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역대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정방향 설정과 사업추진을 정당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구성

○ 활동기간 : 2010.9.10~2012.9.9 (24개월)

- 당초 활동기간 : 2010.9.10~2011.3.9

- 활동기간 연장 : 2011.3.10~2011.9.9 (1차)

2011.9.10~2012.3.9 (2차)

2011.3.10~2012.9.9 (3차)

○ 구성결의

- 결의안 발의 : 운영위원장 (2010.8.13)

- 결의안 의결 :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8.13)

○ 위원선임

- 위원선임(12인) : 제2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0.9.10)

의원명	지역구	상임위	비 고
박양숙	성동4	보건복지	민주당
강희용	동작1	재정경제	
김미경	은평2	문화체육관광	
김용석	도봉1	재정경제	
김정태	영등포2	환경수자원	
박운기	서대문2	환경수자원	
오봉수	금천1	건설	
이정훈	강동1	교통	
장환진	동작2	건설	
정세환	도봉3	문화체육관광	
채재선	마포3	교통	
김춘수	영등포3	건설	

- 추가선임(2인) :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0.10.5)

의원명	지역구	상임위	비 고
김선갑	광진3	재정경제	민주당
조상호	서대문4	재정경제	

1. 제1차 회 의

- 일 시 : 2010. 9. 10 (금) 18: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참 석 : 7명
 - 박양숙, 강희용, 김정태, 김용석(도봉), 오봉수, 장환진, 정세환
- 회의 결과
 - 위원장 선출 : 박양숙(민주당, 성동4)

2. 제2차 회 의

- 일 시 : 2010. 10. 11 (월)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특위 활동계획안 논의의 건
- 참 석 : 8명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강희용, 김미경, 오봉수, 장환진, 정세환, 김춘수
- 회의 결과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으로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 1) 선출

2) 활동계획안 논의의 건

- 특위 세부활동계획(안)의 실현방안 검토
 -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활동계획 추진 고려
 -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가시적 결과 도출이 필요
 - 특위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조례 제정, 상위법 개정 촉구 활동 및 건의안 마련,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하도록 함
- 과제의 범주화를 통한 세부활동 내용의 조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우선 활동 과제)
 -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통한 의회발전 도모 :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추진, 의회 인사독립권 확립,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
 - 장기적 활동 과제 : 위원회 소관 조정 검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3) 향후 일정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검토 및 논의
 - 전문위원실 초안 작업, 위원회 논의 후 검토·수정 절차 진행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활동 및 건의

※ 제2차 회의자료 : 별첨자료 ①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1. 2. 21 (월)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활동경과 보고의 건
- 참 석 : 7명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미경, 김선갑, 김정태, 박운기, 장환진

○ 회의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목적

-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국회 조직 및 운영 등이 집대성된 「국회법」 과 같은 기본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성 및 체계 검토

- 의회 관련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기본조례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일부 조항으로 기본조례안 구성함.
- 인천광역시의의회 경우, 사무처 소관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기본조례 성격의 「인천광역시의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및 규칙 중에서 폐지 또는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 필요

2) 시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안별 검토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 검토

- 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 미비
-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의 개정 필요
- 다만, 인사청문제도에 준하는 인사검증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
- 성남시의회의 산하단체 기관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 진행사례 검토(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처리시 후보자 의견청취 진행 예정)

○ 정례회 등 회기운영 개선 방안 검토

- 타 시·도의회와 회의일수 비교 등을 통해 적절한 연간 회의일수 검토
- 현행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회기를 10일 정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방안 검토
- 3) 시·도의회 소관 자치법규 비교
 - 기본조례 및 의회 운영관련 조례 제·개정 반영 추진
 - 시·도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구성과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
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특이한 조례 및 규칙 등이 제정·운영됨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및 의회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4) 일본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검토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이념 및 원칙 규정
 - 일본 지방의원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차 회의자료 : 별첨자료 ②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1. 4. 28 (목)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건
- 참 석 : 10명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미경,
김선갑, 김정태, 박운기, 오봉수, 정세환, 이정훈
- 회의 결과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제4차 회의자료 : 별첨자료 ③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1. 12. 12 (월) 16:30
- 장 소 :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3층)
- 안 건 :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의 건
- 참 석 : 8명(특위위원 8명/전문가 5명)
 - 특위위원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미경, 김선갑, 김정태, 박운기, 오봉수
 - 전 문 가 : 김찬동(시정개발원 연구위원), 최봉석(동국대 교수), 한상우(한양대 교수), 서경배(서울시 법무담당관), 김형남(시의회입법정책자문관)
- 공청회 내용
 - 조례안의 구성 및 체계 검토
 - 조례의 명칭 관련 등
 - 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 조례안 제출·변경계획 의회통지 관련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의회제출 관련
 - 전원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보고서 관련 등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공청회 결과
 - 1) 조례 제정의 의의 관련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 마련
 -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이 집행부에 예속되는 현 제도

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음.

- 인사권이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이지만,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의 측면에서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현행법 안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기능 강화에 기여
 -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이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함.

2) 조례의 명칭 및 목적 관련

- 「서울특별시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안
 - 조례안의 내용을 명칭에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명칭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합
 -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서울특별시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함.

3) 조례안의 구성체계 관련

- 통일적인 조례의 정비를 위한 바람직한 체계
- 조례에 따른 별도 규칙의 제정 필요
 - 조례안이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
 - 조례안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의회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의 입법기술이 오히려 유리함.

4) 조례안 제출계획의 의회 통지 관련

- 조례안 제출계획이 시장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님
 -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

며, 조례안의 제출계획을 통보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분기별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해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됨.

- 상위법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판단
 - 정부의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5) 분기별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의회 제출 관련

- 예산의 변칙적 운영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성 제기
 - 국회에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같이 조례안의 제11조 제2항을 “시장은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로 수정함.
-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이미 업무 보고로 하고 있으며, 조례로써 제도화한다고 하여 예산집행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부서에서는 제도화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실적은 매분기별 집계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예산실적집행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시의회와 집행부 간 논란의 쟁점으로 삼거나,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는 시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됨.
- 명백하게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례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를 통해 의회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에서 조례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제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견제수단을 설정한 부분임.
 - 재무국에서는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제출 자체를 규제 내지는 견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6) 전원특별위원회의 설치 관련

-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재검토 필요
 -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함.
 - 의원총회 및 기타 여러 의사소통 채널들을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음.
- 조문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함
 - 명칭은 특별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법에 있는 전원위원회와의 성격은 같다고 봄. 다만, 발의·구성요건 및 절차, 위원장 선임, 의결정족수 등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

7) 시정질문 처리결과 본회의 보고 관련

-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는 바람직
 -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함.
- 보고 의무화는 사실상 헌법상 대의제 원리의 침해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회 본회의에 와서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보고로 해석될 수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하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의무화시키는 규정들은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임.

- 단, 조례안의 조문 내용상으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단체장의 직무집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리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간 견제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
 - 지방자치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라는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경우는 의원 개개인의 질문을 개개인마다 일일이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 기관 대 기관의 견제 원리에 위반될 수 있음.
 -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결과보고를 받는 규정 필요함. 본회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 처리결과 보고 요구를 해서 받을 것인지 등의 세부규정이 필요함.

8) 긴급현안질문 관련

- 국회보다 짧은 회기를 감안하여 유사시에 필요한 규정
-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9) 시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회의 출석 보고 관련

-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집행부의 공무원이 직접 의회 출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반

- 보고방법은 집행부에서 재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출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함.

10)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보고서 관련

-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인사검증 부분이 쟁점화되고 전체 조례안 제정 취지나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 염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에 대한 침해여부 논란 있음
 -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조례상 근거를 갖는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겠지만, 청문회를 확대시켜서 일반 행정기구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대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고권, 조직고권 침해에 관한 법적 다툼 발생가능
 - 정치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무직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도를 채택하여 민주적 책임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고려
- 사실상 인사청문회와 유사하여 법령상의 근거 필요
 -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의 인사검증보고서는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다르게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의 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임.
- 인사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개입으로 상위법 위반되지 않으나,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인 견제도 아니고 또 개입하는 정도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집행부 권한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위반되지 않는 소지가 있음.

- 지방공기업 사장 개인에 대해서 서류제출 및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상 없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 있음.
- 내용을 보완하여 인사검증 관련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함
- 인사검증 부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되어 대법원에 제소가 되면 전체 조례가 이 조문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음.

11) 기 타

- 시민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 필요
 - 의회활동에 대한 투명한 시민 공개 필요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회의록 규정의 명시
 - 시민정보공개 및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회의록에 대한 규정 필요

※ 제5차 회의자료 : 별첨자료 ④

6. 축조심사 소위원회

- 일 시 : 2011. 12. 22 (목) 14:00
- 장 소 :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축조심사
- 참 석 : 7명
 - 소위원회 위원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선갑, 김정태, 장환진
 - 김형남 입법정책자문관
- 회의 결과
 - 1)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명칭 수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로 조례명 변경
 - 2) 원활한 의회 회기운영을 위한 회의일수 조정
 - 연간 회의 총일수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
 -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확대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11월 10일'에서 '11월 5일'로 조정
 - 3) 의회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 규정 명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 보고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하도록 규정
 -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시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
 - 4)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 마련
 - 정당중심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 교섭단체의 부대표단 구성 근거 마련
 - 자치법규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 첨부 규정 마련
- 긴급현안질문의 의원당 배정시간을 질문 10분에서 답변시간 포함 20분으로 조정
- 5) 조문 정리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의 삭제
 - 약칭에 대한 별도 조항 대신, 반복되는 용어가 최초 사용 되는 조문에서 괄호로 약칭 표기하도록 수정
 - 전원특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 공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발의
 - 발의일 : 2012.2.9
 - 발의자 : 개혁발전특위 소속 14명 의원(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의결
 -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2.27)
 - 출석의원 76명 중 75명 찬성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요구
 - 서울시 재의요구안 제출(2012.3.19)
 - 재의사유
 - 보좌직원 규정 : 상위법 근거 법령 위반 사항
 -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 시장 인사권 침해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결
 -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4.18)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시행
 - 서울시의회 의장 공포(2012.5.3)

8. 제6차 회의

- 일 시 : 2012. 6. 20(수)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등에 관한 논의의 건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위한 소관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참 석 : 14명(특위위원 12명 / 출석공무원 2명)
 - 특위위원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미경, 김선갑, 김정태, 오봉수, 이정훈, 장환진, 정세환, 조상호, 채재선
 - 출석공무원 :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기동민 정무수석비서관
- 회의 결과
 - 1) 서울시 조직개편안 관련 질의답변(요약)
 - 추진 중인 서울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소개
 - 서울시의 현행 5실 4본부 5국 체제는 그대로 유지
 - 유사·중복기능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제 구축
 - 조직간 상호연계성을 보완하며, 중복을 제거하고 통합·일원화
 - 시정운영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성
 - 도시재생, 일자리, 주거, 장애인, 복지분야 기능 재정비·강화
 - 시정현안과제로 상호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T/F추진단 구성
 -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 향후 일정
 - 조직개편 자문단 자문받아 조직개편안 마련 : 7월중
 -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후 조직개편(안) 확정 : 8월초
 - 서울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요구
 - 서울시 조직개편의 시기는 하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고려하

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서울시 조직개편은 시의회 회기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관 조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 청취 필요
- 서울시 조직개편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의회에 충실히 제공·공유할 것임

2)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관련

- 교통방송의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성 논의
 - SNS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통방송의 역할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의 소관 지정 검토
 - 교통방송의 문화콘텐츠 생산·진흥 역할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의 소관 지정 검토
 - 홍보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감시를 위해 교통방송과 대변인 및 시민소통기획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일원화 필요
- 교통방송의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위해 독립법인화 필요
 - 현행 교통방송의 위상 불분명(기관의 위상정립 필요)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조직 개편 필요
 - 도시철도국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분리할 필요 있음
- 도시안전실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원화 필요
 -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분리된 소관 상임위를 일원화
 - 수질 및 지하수 관리 담당 조직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으로
- 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원화 필요
 -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로 분리된 소관 상임위를 일원화
 - 1개 상임위원회가 1개 산하기관을 소관으로 담당해야 함
- 운영위원회 소관 조직의 현행 유지 필요
 - 사회혁신, 마을만들기, 갈등관리 등을 시장의 역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로 유지

-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로 유지

3) 소관 조정 소위원회 구성 의결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정태, 장환진

※ 제6차 회의자료 : 별첨자료 ⑤

9. 상임위 소관 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2. 6. 27.(수) 17:00
- 장 소 :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논의의 건
- 참 석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정태, 장환진
- 회의 결과
 - 현행 각 상임위별 조직 규모 및 예산 분포 검토
 - 도시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위원회' 신설 논의
 - 기존 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 소관 부서의 합리적 조정 등 협의

10. 상임위 소관 조정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2. 6. 29.(금) 17:30~19: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
- 안 건 : 상임위 소관 조정 재논의의 건
- 참 석 : 박양숙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강희용, 김정태, 장환진

○ 회의 결과

- '도시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안전실 사무 중 물관리정책관,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을 소관부서로 함
- 기존 도시관리위원회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혁신기획관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정보화기획단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건설위원회로 각각 변경 조정함
- 소관 조정 개편안 채택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8
----------	----

제안년월일 : 2010년 8월 13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주 문

- 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 의원들
의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
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한 헌법기관이자, 시민대표기관, 최고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권, 예산 심의·확정권, 행정사무 감·조사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역대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정방향 설정과 사업추진을 정당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 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정방향 설정과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사후에 단순 추인하는 거수기로 본연의 역할을 축소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지방의회무용론”이 제기되고 “통법부(通法府)”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지방의회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역대 의회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 넘어 서울시의회가 시민 중심적인 서울시정을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견인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의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의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0.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4
----------	-----

제안년월일 : 2011년 4월 28일

제안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규정의 제약과 제도의 미비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과 정착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답보상태임.
-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규정의 제약과 제도의 미비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지켜지지 못하고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분권의 정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천명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수평적 권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률안 발의와 청원이 수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 및 지역정책 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법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하였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나아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관련 규정 개정안 별첨)

첫째,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확대를 통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넷째, 지방의원의 입법·정책업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별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의 신설을 거듭 촉구한다.

2011.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별첨자료]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 황

-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임용하다보니 몇 년이 지나면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음.

문 제 점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경우는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나, 일반직의 경우는 집행부로 돌아가는 순환보직이다 보니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 지방의회의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의회직렬이 신설될 경우 인사교류 제한, 승진 및 보직관

리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21여개의 지방공무원
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관련 법규 개정안

관련법규	현 행	개 정(안)
지방 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생략) ② <u>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u>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u>

※기타 본 규정과 관련된 조항들은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함.

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확대를 통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자 함.

□ 현 황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복리와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17조에 기초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항들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위임함.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법률의 대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방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관련 법규 개정안

관련법규	현 행	개 정(안)
지방 자치법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p>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22조(조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 <단서 삭제></p> <p>제23조(규칙) -----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p>

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현 황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능력을 검증하며 임용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됨.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문 제 점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의 규정 신설 필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안(김동철의원 등 12인 / 2010.9.29 발의) 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 지방공기업법의 제58조 개정 필요

-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시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2010.9.29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법규	현 행	개 정(안)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u>임명하여야</u>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임명하되, 사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 ----- ----- ----- ----- .

4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고,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적 정책의회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 현 황

- 지방자치 부활이후 매년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양적, 질적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지원제도는 발전하지 않고 있음.
-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현저히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 제 점

- 국회의원의 경우 10여명 내외의 보좌직원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를 금지하고 있고, 변형된 의원보좌관 제도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제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함.

관련 법규 개정안

관련법규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직원을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박양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5
----------	-----

발의년월일 : 2012년 2월 9일
발의자 : 박양숙·김용석(도봉1)·강희용
김미경·김선갑·김정태·김춘수
박운기·오봉수·이정훈·장환진
정세환·조상호·채재선 의원(14명)
찬성자 : 운명화 의원 외 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 서울시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의회는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의회의 의정활동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의원 간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로 하며, 제1차·제2차 정례회는 합하여 7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5조, 안 제7조).
- 마.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조례안 제출계획과 변경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바.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사.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56조).
- 아.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본회의 제출 후 시장에 송부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
- 자.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

차.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고,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9조 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회의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보좌직원)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의 원

제22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위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2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0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

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재정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 7. 건설위원회
- 8. 도시관리위원회
- 9. 교통위원회
- 10. 교육위원회

제34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 가. 경제진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 아.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 가. 공원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도시안전실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복지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건설위원회

- 가. 도시안전실 사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
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
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전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
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
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
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제3항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 38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 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 38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8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9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50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1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7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9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6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2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

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4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IV

관련 보도자료

자료제공 : 2010. 9. 10(금)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시 의 원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제목 : 박양숙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명의 의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양숙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

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박양숙 의원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 원내행정실 의사국장 및 민주당 중앙당 평가감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의회운영 제도와 실무의 전반을 두루두루 섭렵한 전문가이다.

2011. 4. 29(금) 조간(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제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개정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민주, 성동4)는 4월 28일(목),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정착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 건의안은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아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수평적인 권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인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 이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5월 2일(월)에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5월 중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각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11. 12. 10(토) 조간(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위 원 장</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박양숙</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3783-1586</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r> </table>	위 원 장	박양숙	3783-1586						
위 원 장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매수 : 2매										

제목 :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 개최 -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민주, 성동4)는 12월12일(월) 오후 4시30분부터 의원회관 3층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들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 체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 특히,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특별위원회 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의회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의 체계와 상위법 위배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전문가 공청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 김형남 서울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 등이 참석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 박양숙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발전에도 모호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며 공청회 개최의 의미를 밝히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민주적인 시의회 구현을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다른 시·도의회에 모범이 되고,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2012. 2. 9 (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2월 09일(목) 0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제목 : 서울시의회 혁신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주도로 박양숙의원 대표발의
- 기본조례안의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을 제시
- 현행 시의회 운영 관련 산재된 조례를 기본조례안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여 효과적이며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
- 의원보좌인력 도입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등 서울시의회의 독립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 담아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민주, 성동4)는 2월9일(목)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개혁발전특위) 위원 14인에 의해 공동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은 다수의 조례로 분산·운영되

었던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강화와 기능 확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 개혁발전특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당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개혁발전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본조례안은 효과적인 의회 운영과 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다.

- 박양숙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는 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타 시도의회에서도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의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기본조례안 발의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불균형한 권한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 지난 2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을 지적하

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 가운데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있으며, 오히려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불균형은 심화되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기본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한 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 특히, 기본조례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과 의원 보좌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회의일수 확대 및 조례안제출계획의 의회 통지 등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내용 담아〉

□ 기본조례안은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기본이념을 제시하였다.

-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 확립을 기본이념으로 제안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 내실있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회의일수를 조정하였다.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현행 14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회기를 확대·조정하여 의원의 심도 깊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 시장 및 교육감에게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미 중앙정부는 국회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기본조례안에서도 시장 및 교육감에게 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를 규정하여 집행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매분기별 제출되는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이 충실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서울시 재정 운영과 함께, 집행부 사업 집행에 대한 의회의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성 및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보좌직원 도입 및 산하기관

장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규정 담야〉

- 기본조례안에는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의원의 입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처리함에 있어 현재 의원의 지원 및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좌직원 도입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이에 기본조례안에 의원보좌직원 도입을 과감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의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의 민원해결 통로로서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21조(보좌직원)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사후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문성을 가진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 공기업 등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본조례안에서 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 내에서 시장의 인사권을 사전에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될 수 있으며, 시장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 제57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인사검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의 인사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번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양숙 위원장은 “의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혁발전특위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물론, 서울시의회의 위상강화 및 기능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의회 운영의 모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012. 2. 27(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제목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본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
- 기본조례가 서울시에 이송되면, 서울시장에 의해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월27일(월)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개혁발전특위)의 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민주, 성동4)이 대표발의한 기본조례안을 출석의원 76명 중 의원 7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본조례안은 지난 2월9일(목) 개혁발전특위 위원 14명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2월 24일(금) 운영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 박양숙 위원장은 “다수의 조례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체계와 구성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라고 기본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그 의의를 밝혔다.

□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시장 및 교육감에게 당해연도 조례안 제출계획을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충분한 안전심의회가 이루어지고 예측가능한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보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의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증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장의 산하 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 보고서 작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 인사를 유도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의회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기본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대표발의자인 박양숙 의원은 “기본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하고, “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지방의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20일 이내에 서울시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2.03.20(화) 조·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3783-158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제목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 의요구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 보좌직원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항
- 산하 기관장 경영능력 보고서 작성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음
-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재의결로

대응할것임

- 서울시는 3월 19(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 기본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참석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76명 중 75명)으로 의결되어 서울시장에 의한 공포를 앞둔 상황이었다.
- 서울시의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

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임에도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재의결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보좌직원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항〉

- 서울시는 기본조례안 제21조에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과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좌관제도는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의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1996년 판례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 출범 초기의 낡은 판례로써 이미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판례 판단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15년전의

넓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 또한 서울시는 지방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행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이야말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보좌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산하기관장 경영능력 보고서 작성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음〉

- 서울시는 기본조례안 제57조제1항의 산하기관장 검증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산하기관장 임명권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재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박양숙 위원장은 산하기관장 검증보고서 작성 규

정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하기관장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고서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인 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 특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기업 사장의 경영능력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임무이자 권한임을 분명히 하였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바란다면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보다 신중 했어야〉

-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박양숙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기본조례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염원을 담고 있는 만큼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집행기관의 권한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

킬 수 있는 기본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정의 발전을 바란다면 재의 요구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서울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 한편 오늘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오는 4월에 예정된 제237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기본조례안은 확정된다.

V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위원장	 박양숙 (朴良淑)	사) 3783-1586 팩) 3783-1589	andante96@hanmail.net	민주당 (성동4) 재정경제
부위원장	 김용석 (金容錫)	사) 999-9373 팩) 3783-1689	goldds2@naver.com	민주당 (도봉1) 재정경제
위원	 강희용 (姜熙龍)	사) 3280-0002 팩) 3783-1619	kangsdaq@gmail.com	민주당 (동작1) 도시계획관리
위원	 김미경 (金美京)	사) 3783-1611 팩) 3783-1614	song-a6565@hanmail.net	민주당 (은평2) 도시계획관리
위원	 김선갑 (金善甲)	사) 3783-1536 팩) 3783-1539	ksungab@paran.com	민주당 (광진3) 행정자치
위원	 김정태 (金正泰)	사) 2069-0522 팩) 3783-1699	2kimct@naver.com	민주당 (영등포2) 도시계획관리
위원	 김춘수 (金春洙)	사) 826-0033 팩)	kimcs50@hanmail.net	한나라당 (영등포3) 건설
위원	 박운기 (朴雲基)	사) 3783-1896 팩) 3783-1899	sumwool@hanmail.net	민주당 (서대문2) 재정경제
위원	 오봉수 (吳棒洙)	사) 803-0095 팩) 3783-1679	ohbongsoo@empal.com	민주당 (금천1) 건설
위원	 이정훈 (李定勳)	사) 478-5478 팩) 3783-1889	inhoo0182@naver.com	민주당 (강동1) 교통
위원	 장환진 (張煥珍)	사) 3783-1636 팩) 3783-1639	6252821@hanmail.net	민주당 (동작2) 도시계획관리
위원	 정세환 (鄭世煥)	사) 3783-1576 팩) 3783-1579	caosan96@hanmail.net	민주당 (도봉3) 문화체육관광
위원	 조상호 (趙相鎬)	사) 3783-1876 팩) 3783-1879	tax3558@naver.com	민주당 (서대문4) 교통
위원	 채재선 (蔡在善)	사) 332-6447 팩) 377-1116	caijs2002@lycos.co.kr	민주당 (마포3) 교통

별첨자료 ①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제 2 차 회 의 자 료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의정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함

I 구성개요

■ 구성목적

- 의회 관련 법·제도개선과 의정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 개혁방안의 체계적인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구성기간

- 2010. 9. 10 ~ 2011. 3. 9 (6개월간)
 -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주요경과

-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2010.8.13,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
- 특위 위원 선임안 의결(2010.9.10,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 특위 위원장 선임(2010.9.10, 특위 제1차 회의)
- 특위 위원 추가 선임(2010.10.5,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II

활동개요

-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법 제·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규칙 정비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추진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효율적 의정활동 및 독립적 의회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의원보좌관제도 마련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 위원회 소관 조정 검토
-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촉구 활동 및 건의방문

III

세부활동계획

- 우선 추진 과제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추진
 -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정 수행과 정책개발을 위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의회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의 통합적 개선 유도
- 〈주요내용〉
- 의원의 의안 발의권 개선을 통한 조례제정권 강화

- 예산안 심의권 확대(서울시 편성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확정 기능 강화)
- 질의 및 발언권, 자료요구권, 동의발의권 등의 권한 확대
- 시의회 입법 및 정책 지원 조직 및 기능 강화의 근거 마련

■ 효율적 의정활동 및 독립적 의회운동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확대 건의 추진

-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 제정은 제한됨
- 이에 따른 지방의회가 효과적인 자치사무의 시행을 위한 절차나 규정을 추가할 수 없어 비효율을 초래

〈주요내용〉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조례입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치사무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에 벌칙규정 허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추진

● 의회 인사독립권 확보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주적인 의회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한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의회 인사권 부여
-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필요

〈주요내용〉

- 의회사무직원에게 대한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로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 지방의회 의사결정기능 확대로 입법보조 인력의 확보 필요
- 지방의정 활동기반 확대를 위한 개인보좌인력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 촉구안 마련
-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 보조인력 배치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방안 마련

-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며, 경영능력, 전문성, 자세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출연기관장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주요내용〉

- 소관 상임위원회별 인사검증시스템 제도 구축
- 서울시 역량 검증 및 자기검증서 도입 추진
-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법규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도입사례 검토
-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추진

■ 장기적 활동 과제

●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검토

-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감시 및 시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의 소관에 대한 검토 및 조정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의 개선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마련
- 향후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시 집행부 직제 개선하도록 권고 추진

IV

향후추진계획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방문·협의 및 관련법 개정 촉구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촉구 건의
- 법·제도 개선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 촉구 건의안 제출
-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안건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수시 개최

별첨자료 ②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제 3 차 회 의 자 료



2011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1 특위 활동 경과

■ 구성목적

-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며, 서울시의회 의정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개선 추진

■ 구성기간

- 2010. 9. 10 ~ 2011. 3. 9 (6개월간)
 -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활동과정

-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2010.8.13,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
- 특위 위원 선임안 의결(2010.9.10,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 박양숙 위원장 선출(2010.9.10, 제1차 회의)
- 김용석 부위원장 선출(2010.10.11, 제2차 회의)
 - 특위 활동계획(안) 논의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추진
 - 국회법 및 시의회 자치법규 비교·검토
 - 광역지방의회 소관 자치법규 비교·분석
 - 일본 지방자치의회 기본조례 내용 검토
- 정책연구실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추진 계획 중
 -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 서울시의회의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의정수행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검토
 - 시의회사무처 소관 조례(11건), 규칙(4건)

조례 및 규칙	근거 법규	국회사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62조	국장감사 및 조예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56조	국회법(제33조~제71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지방자치법 제38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4조	국회법(제4조~제8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국회사무처법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2조	국회의원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국회청원심사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제71조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8조	국회사무처직제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참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사무처 소관 조례의 통·폐합으로 기본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조항	조례(안)	관련 법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말한다. 4.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	
제2장 개회식 및 선서		
제3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제3장 의회의 기관		
제7조(의장부 의장의 선거방법)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조항	조례(안)	관련 법규
제8조(의장·부 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9조(임시의 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1조(의장·부 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12조(의장· 부의장의 겸 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2
제1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
제4장 정례회 등의 운영		
제14조 (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5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① 의장은 각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제16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조항	조례(안)	관련 법규
제17조 (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8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19조(위원 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
제20조(상임위 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4조
제21조(상임 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
제22조(상임 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23조(상임 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
제24조(상임 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조항	조례(안)	관련 법규
제25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6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28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2
제2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조항	조례(안)	관련 법규
제30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
제3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제3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기본조례(안)에 포함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포함
 -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제89조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을 검토 후 기본조례(안)에 포함
 -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 예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안자 : 위원장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회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약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의원 당선인의 등록 및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및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교섭단체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연간회의 일수,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회기, 정례회 등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마. 위원회 설치, 상임위원장, 직무, 위원정수 등 위원회와 위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말한다.
4.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

제2장 개회식 및 선서

제3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장 의회의 기관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례회 등의 운영

제14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① 의장은 각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장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16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18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22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23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4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제2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

1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 검토

1)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의 검토

□ 내 용

-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규정함.(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안전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제3항)
- 다만, 국회에서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국회법 제48조)
- 시의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 운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위원 선임 및 개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2) 특별위원회 중간 평가 체계 마련

□ 내 용

- 의회에 설치·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의 남설을 막고 내실있는 운영 필요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며
- 또한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내실있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특별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u>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10조(특별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u>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에 중간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

3) 의회사무처 하부조직의 설치 명시

□ 내 용

- 서울시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 사무처 하부조직의 책임있는 사무행정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바,
- 동 조례 제4조에서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등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할 필요 있음.
- 이에 따라, 사무처 하부조직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둔다.

□ 개정안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u>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둔다.</u>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u>처장 밑에 공보실장·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장을 둔다.</u>

4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 내 용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투자·출연기관을 설치 운영중인 바,
- 이 기관장 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용하여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공사·공단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

□ 관련 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인사청문회)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건의안 예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출연기관을 설치·운영 중인 바, 이들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절차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체계를 도입하여 정실·보은인사로 얼룩진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같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기관장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인사 임용의 절차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투자·출연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일동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용에 있어 공정한 인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2.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의원 일동

5 시·도의회 소관 자치법규 비교

■ 소관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 자치법규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됨.
- 광역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구성
 - 16개 시·도의회 의 소관 자치법규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례’ 등으로 구성됨.
 - 각 시·도의회 의 소관 자치법규의 구성과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특이한 조례 및 규칙 등이 나타남.

■ 특이한 자치법규의 제정 현황

- 기본조례 및 의회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제주 의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색 있는 조례 및 규칙이 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 직원 임용 및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법 등 각종 상위 법령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타 시·도의회 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주도의회의 자치법규 입법권의 재량이 넓음.

의회 소관 특이한 자치법규 비교

시·도	조례명	주요내용
부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의회보 게재사항, 의회보편집위원회 구성 및 설치, 위원장 직무 등 규정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 위한 의정자문 사항을 규정 · 자문위원 위촉, 자문절차 등 규정
	대구광역시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 관한 사항 · 조례번호 부여,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 규정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 · 집행기준, 지출증빙서류, 공개대상 및 내용, 공개범위 규정
경기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의회 정보화 정책과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 직무 규정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 · 위원회 기능, 위원 임기, 징계 관련 사항 규정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지원신청, 지원범위 등 규정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정활동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 위한 사항 규정 ·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 포상 등 규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사기관, 임용과 시험, 인사교류 등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및 첨부서류, 청문회 절차, 증인의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등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번호부여, 공포방법, 공포일 등 규정

6 참고자료

■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1) 홋카이도(北海道) 의회 기본조례

2009년 7월10일(조례 제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홋카이도 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해, 기본적인 이념 및 원칙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홋카이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직무나 책무 등을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방 분권의 진전에 대응한 주체적인 의회 운영을 확립해, 따라서 도민의 신탁에 대답해 도민 생활의 향상 및 홋카이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인 것과 동시에, 지사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 「지사 등」이라고 한다.)을 감시 및 정책의 입안 및 정책의 제언(이하 「정책 입안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의사 및 의견(이하 「도민 의사 등」이라고 한다.)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논의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홋카이도에 어울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의회의 역할 및 활동

제3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본회의 및 위원회로의 심의를 시작으로 한 다양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 의사 등을 도정에 반영해, 의결에 의해 도(道)로서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회의 설명 책임 등) 의회는 심의 등의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도민에 대해 설명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회 운영의 원칙) 1. 의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도민에게 열린 운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의회는 도정상(道政上)의 과제 등에 적확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당 개최하는 등 연건을 통한 의회 운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의회는 질의 또는 질문(이하 「질의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필요하게 응해 일문

일답 방식을 실시하는 등 논점을 명확하게 하여 도민에게 알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5. 지사 등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질문자에 대해서 답변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 질의 등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6. 의회는 회의안이나 의견안 등의 심의에 즈음해, 적극적인 의원 상호의 토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1.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쇼와22년 법률 제6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제4항, 제109조의2 제4항 및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도의 사무 등의 조사, 부탁 된 의안, 청원 등 또는 사건의 심사 등을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도민에게 열린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의를 원칙으로서 공개한다.

4. 위원회는 재해 등에의 신속한 대응 또는 지역의 과제와 관련되는 조사 때문에, 필요하게 응해 회의를 관계 시읍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검토 조직의 설치) 의회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의하는 것 외에 도정의 과제 및 의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으로 구성하는 검토 조직을 설치해, 심사, 조사, 협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조사) 의회는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안 또는 도(道)의 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도 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의원의 역할 및 활동

제9조(의원의 사명) 1. 의원은 부단히 도정의 과제의 파악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공익성 또는 공평성의 견지로부터, 홋카이도 전체의 발전 및 도민 생활의 향상 때문에, 본회의의 질의 등을 통해 도민 의사 등의 적절한 반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의원은 스스로의 자질 향상 때문에, 부단한 마나부씨에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의원은 도민이 대표로 한 자각 및 책임감을 가져, 의원의 품위 및 자율의 정신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도민에 대한 설명 책임 등) 의원은 도민 의사 등을 도정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도민 의사 등의 파악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의 의회 활동에 대해서, 도민에게의 설명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1조(의원의 활동) 의원은 도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합의제 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다음으로 내거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및 의안의 심사 또는 의회의 운영에 관계되어 협의 또는 조정을 행하기 위한 장에서 심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

- (2) 도의 정책 형성에 관련되는 조사, 기획, 입안, 제언 등을 실시하는 것.
- (3) 도의 정책 형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 도민 의사 등의 조사, 주민과의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
- (4) 도 정상의 과제 등의 파악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의견의 청취 및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
- (5) 지사 등이 주최해, 또는 공동개최하는 식전 그 외의 공적 행사에 출석을 하는 것.
- (6) 의회 등이 주최해, 또는 공동개최하는 연수회 및 제활동에 참가를 하는 것.
- (7) 재해 등에 있어서의 긴급적인 조사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
- (8) 회파(소위원회) 또는 특정의 도정의 과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단체(이하 「의원 연맹」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가를 하는 것.
- (9) 그 외 도정운영상 필요라고 인정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

제12조(연수 및 조사 연구) 의원은 의안의 심사, 정책 입안 등에 필요한 연수에 참가해, 및 조사 연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 파견 등의 제도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정무 조사비) 제11조에 규정하는 의원의 활동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부를 받은 정무 조사비에 대해서,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자산 등의 공개) 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 윤리의 확립을 기해, 따라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홋카이도 의회 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헤세이 7년 홋카이도 조례 제37호)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소위원회) 1. 의원은 의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의회 내의 의원 단체로서 정책 입안 등을 실시하는 것 외에 소속하는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그 회의를 주최하는 것 외에 정책 조사, 예산 요망 등의 실시 주체가 될 수 있다.
4. 의회는 소위원회간의 협의가 필요로 인정했을 때는, 협의의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의원 연맹) 1. 의원은 의원 연맹을 결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의원 연맹은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활동의 성과를 의회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도민과의 관계

제17조(도민 의사 등의 반영) 의회는 도민 의사를 파악해,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

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청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홍보) 의회는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 제활동에 관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회 활동에 관한 자료의 공개) 의회는 홋카이도 의회 정보 공개 조례(헤세이11해(1999년) 홋카이도 조례 제18호)에 의해, 적극적으로 의회 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지사 등과의 관계

제20조(지사 등과의 관계의 기본 원칙) 의회는 이원대표제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져, 지사 등이 집행권을 가진다고 하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보관 유지하면서 공통의 목표인 도민 생활의 향상 및 홋카이도의 발전 때문에, 스스로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해야 한다.

제21조(감시 및 평가) 1.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집행이 적정하게, 한편,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지 감시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도록 재촉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집행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재촉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정책 입안 등) 의회는 의원 제안에 의한 조례의 제정, 결의 등을 통해서, 정책 입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의회 개혁

제23조(의회 개혁) 1. 의회는 지방 분권의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스스로의 개혁에 부단히 임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대전을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0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으로 구성하는 검토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의원 정수 등) 의회는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및 각 선거구에 있어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에 대해서, 도민 의사 등이 적확하게 반영되도록(듯이)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의회 사무국 등) 1. 의장은 의회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시켜, 의회 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는 직원의 배치 및 육성을 실시

하는 등 의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서관의 충실 강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있어서의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해, 또는 개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검토) 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 후, 도민의 의견, 사회 정세의 변화등을 근거로 해 이 조례의 시행의 상황 등에 대하여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헤세이22년(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오사카부(大阪府) 의회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사카부 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및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책무 및 활동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지사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 「지사 등」이라고 한다.)과 의회와의 관계 그 외의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가 그 기능을 높여 가지고 부민 복지의 향상 및 부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회는 지사와 함께 이원대표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으로써, 부민의 신탁에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본연의 자세를 검증해, 개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의원 활동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1. 의원은 의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그 외의 회의에 출석해, 심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하게 응해 의안의 제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원은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부정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넓고 부역, 부정의 제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 필요에 따라서 지사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의원은 그 활동에 대해 부민에게의 홍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의원은 그 자질의 향상을 향해서 부단한 연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소위원회) 의원은 의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제3장 의회 운영

제5조(의회의 활동 원칙) 1. 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부민에게 알기 쉽고, 열린 의회 운영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설명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정보의 공개의 추진에 대해서는, 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절하고 효과적인 의회 운영) 1. 의회는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때문에), 의안의 심의 등에 해당되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정례회의 회수에 대해서는 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수 및 선거구) 1. 의회는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의 설치에 대해서, 부민의 의사를 부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당,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의회의 기능 강화

제8조(조사기관등의 설치) 의회는 그 활동에 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에 의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조사 또는 심사를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정무 조사비) 1. 소위원회 및 의원은 의회의 역할 및 의원의 직무를 충분히 인식한 뒤, 조사 연구 및 홍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무 조사비의 교부를 받는 것으로 한다.

2. 정무 조사비의 교부에 대해서는 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부민과의 관계

제10조(부민과 의회의 관계) 의회는 부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는 등, 부민이 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의 확보를 도모해 부민의 의사를 부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홍보기능의 충실) 의회는 의회에 대한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항상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부민에게의 정보 제공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지사 등과의 관계

제12조(감시 기능의 충실) 1.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조사 및 감시를 하는 책무를 가진다.

2. 의회는 회의에 있어서의 심의 등을 통해서 부민에 대해, 지사 등의 사무의 집행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의회는 의원 제안에 의한 조례의 제정 등 모든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기본적인 계획의 의결) 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 행정의 전반과 관련되는 정책 및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종합적인 동시에 체계적으로 정할 계획의 책정, 변경 또는 폐지는, 의회의 의결해야 할 사건으로 한다.

제7장 정치 윤리

제15조 의원은 부민이 대표로 하고,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품위의 보관 유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의회사무국

제16조 의회는 의회 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의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17조(이 조례의 위치설정) 이 조례는 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폐를 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18조(이 조례의 재검토) 의회는 사회 정세의 변화, 국민의 의사 등을 근거로 해 필요에 따라서 이 조례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헤세이 21년(200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적용 구분)

2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책정된 제14조에 규정할 계획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미타카시(三鷹市) 자치기본조례

전문

주권자인 시민의 신탁에 근거하는 미타카시정은 참가와 협동을 기본으로 하며, 시민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시민에게 가장 친밀한 정부인 미타카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시민을 위한 지역가꾸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가꾸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동의 지역가꾸기를 진행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성이 넘치는 거리 미타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타카시는 사랑스런 초록과 물이 풍부한 거리이며, 지금까지 시민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선구적인 지역가꾸기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 시민은 향토애를 바탕으로 미타카를 사랑하고, 자연과 문화,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의 기여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협동과 커뮤니티에 기인한 시민 자치를 실시하여 일본국 헌법에 의거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타카시의 최고 규범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타카시의 자치의 기본 이념과 기본 원칙 및 자치 기구와 자치 운영의 기본적인 구조를 정하여, 시민의 신탁에 의한 시의회 및 시장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자치에 의한 협동의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일본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뜻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시민 : 시내에 살거나 또는 시내에서 일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사업자 : 시내에 소재하고, 영리 또는 비영리 활동, 공공 활동, 그 밖의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 (3) 시장 등 : 시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공평위원회, 농업위원회 및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 (4) 시 : 기초자치체로서의 미타카시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최고 규범성) 1. 이 조례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의 최고 규범이고, 시는 다른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및 법령, 조례, 규칙 등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조례와의 적합성을 도모해야 한다.
2. 시민 및 시는 지방자치의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대한 부단한 재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여 장래에 이 조례를 발전시킨다.

제2장 시민 및 시민자치

제4조(시민의 권리·책무) 1. 시민은 지역의 자치 활동,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 공헌 활동과 그 밖의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조직 등을 만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립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2. 시민은 지역의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시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시민은 전 2항의 활동을 실시할 때 스스로의 발언 및 행동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시민 상호의 연대 및 책임에 근거하여 상호 의견 및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시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책무) 1. 시민은 시정의 주권자이고, 시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에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2. 시민은 시정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기와 관련되는 개인 정보의 개시 및 적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시민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짐과 동시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책무) 1.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립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시민 및 시와 상호 제휴 및 협력을 도모하고 협동의 담당자로서 지역개발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2. 사업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지역 사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윤택하며 쾌적한 환경의 실현 및 지역개발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시의회

제7조(시의회의 역할·책무) 1. 시의회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신택을 받은 의원에 의하여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이며, 시민의 신택에 응하기 위해 안건의 결정, 시정의 감시 및 견제를 실시한다.
2. 시의회는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열린 의회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의회는 전 2항의 역할·책무 등을 다하기 위해 시의회가 갖는 권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활동한다.

제8조(시의회의 입법활동·조사활동) 시의회는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정책 제언 및 정책입안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활동, 조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9조(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그 지위가 시민의 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

정의 대표자로서 시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시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

2. 시장은 매년도 시정 운영의 방침을 명확하게 정함과 동시에 그 달성 상황을 시민 및 시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제10조(집행기관의 제휴 및 협력) 시의 모든 집행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책임을 지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시장의 종합적인 조정 아래 집행기관 상호의 제휴 및 협력을 도모하면서 행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기관의 설치) 1. 시장은 부시장 등의 상근 특별직을 설치하고, 시장의 업무를 보좌해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조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대리케 하기 위해 조역의 호칭을 부시장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시정 운영

제12조(시의 출선 행동의 기본 원칙) 시는 국가가 비준한 국제 규약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출선하여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의 지위) 1. 시장은 종합적·계획적인 시정 운영을 행하기 위해 시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구상을 정함과 동시에 기본 구상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책정한다.

2.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책정한 개별 계획은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시는 시가 보유하는 정보가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모든 사람의 알권리의 실효적 보장이 시민 참가 및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 운영의 추진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열린 지자체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시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행함과 동시에 자기와 관련되는 개인정보의 개시와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6조(공청회) 시장 등은 중요한 조례 및 계획의 책정 등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사전에 안건을 공표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시장 등의 생각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7조(설명 책임) 시장은 정책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책임을 가짐과 동시에 계획의 책정

및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목표의 달성 유무 및 달성 상황 등의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 제18조(요망·불평 등에의 대응) 1.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요망·불평 등에 성실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관하여 신속하게 시민에게 회답해야 한다.
2. 시장 등은 시민이 제기한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미연 방지 등의 적절한 대응에 힘써야 한다.
3. 시장 등은 매년 시민의 바람과 어려움 등에 관한 대응 상황을 연차보고로 정리하여 이것을 공표한다.

- 제19조(옴부즈맨) 시장은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을 공정하고 중립인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을 옹호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미타카시 종합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을 설치한다.
2. 옴부즈맨은 시민이 제기한 어려움, 자체 발의로 채택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고충 등의 원인이 제도 자체에서 기인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개선을 제언할 수 있다.
3. 시장 등은 옴부즈맨의 직무 수행에 관한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며, 옴부즈맨한테 권고나 제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존중하여 성실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직원과 조직) 시는 폭넓게 인재를 추구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직원을 임용하는 데 노력하고,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효과적인 인재육성과 적절한 인사평가, 처우를 실시하여, 직원과 조직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해당 직책이 시민의 식탁에서 유래하고,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자각하여, 법령, 조례 등과 임명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자치의 충실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의 조직은 시민이 알기 쉽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체계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제21조(적법·공정한 시정 운영) 시정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방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조직의 자정작용에 의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정을 항상 적법하고 공정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제22조(정책 법무) 시는 시민의 요구나 시의 행정과제에 대응한 주체적인 정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해석권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2. 시는 이 조례와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기본조례나 종합조례 등을 정비한다.

제23조(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시장 등은 행정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민에게 공표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자치단체 경영) 시장 등은 사업 실시에 있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의 전략적인 전개를 도모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과 성과 중시의 관점에 입각한 자치단체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시의 재정, 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공표하여 시의 경영 상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시장은 다른 집행기관과 연대를 도모하면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간 부담의 적정화와 사회자본 정비 등에 있어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5조(행정 평가) 시장 등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목표 설정에 근거한 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시책 등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행정 평가 정보를 알기 쉽게 시민에게 공표한다.

제26조(감사) 감사 위원은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 집행, 경영과 관련되는 사업 관리의 감사, 시의 사무 집행에 대해 사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외에도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27조(출자단체 등) 시장 등은 시의 출자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가 출자한 목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 등은 다른 단체에 출자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단체에 업무와 재무에 관한 정보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 등은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 등이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의 고충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고충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단체 등에 대해 의견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위기 관리) 시는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안전성 확보와 향사에 노력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기동적인 위기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사업자, 관계기관의 협력, 연대와 상호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제6장 참여와 협력

제29조(계획의 책정 과정 등) 시장 등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타 중요한 개별계획(이하, '계획 등')의 책정에 있어서 시민의 다양한 참가를 보장하고, 시민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집 등을 작성한다.

2. 시장 등은, 계획 등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달성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 내용을 공표하고,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등을 개정한다.

제30조(시민회의 등의 설치와 운영) 시장 등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회의, 심의회 등(이하 시민회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민회의 등을 설치할 때, 설치목적 등에 맞게 위원을 공모하고, 위원의 남녀 비율, 연령 구성, 선출 구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동일한 위원이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취임하거나, 같은 시기에 다수의 시민회의 등의 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 등은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민회의 등의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민회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에 붙여 해당 회의의 전부나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31조(커뮤니티 활동) 시장 등은 시민의 자발적인 지역에서의 자치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활동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센터와 지구 공회당(이하 커뮤니티 시설)의 환경 정비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시민과 연대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2. 커뮤니티 시설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기초로 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제32조(협동하는 마을 만들기) 시장 등은 시, 시민, 사업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대 협력하여 지역 만들기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협력하는 지역 만들기 추진하기 위해 시민협동센터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2. 시장 등은 협동의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참가와 의사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열린 장소와 기회의 창설에 노력해야 한다.

3. 시민, 사업자 등과 시장 등은 계획의 책정과 실시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력하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기능, 책무 등을 규정한 파트너십 추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학교와 지역의 연대 협력) 교육위원회는 지역과 연대 협력하고 학교 운영에 보호자, 지역주민 등의 참가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힘을 살린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실시한다.

2. 교육위원회는 지역, 시장과 연대 협력하여 학교를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추진한다.

제34조(출자단체와 기타 행정기관과 연대 등) 시장 등은 시의 출자단체와 기타 행정기관과 연대하여 종합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주민투표) 시내에 주소를 가진 연령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시의 권한에 속하는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총수 50분의 1 이상의 연대서명과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가 시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례안은 투표에 붙여야 할 사항, 투표 절차, 투표 자격 요건과 기타 주민투표의 실시와 관계되는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시의회를 소집하여 청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시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동향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포해야 한다.
4. 전 3항의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처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제2항, 제4항과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제74조 2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그리고 제74조 3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7장 정부간 관계

제36조(국가, 도·군·구 등과 정부간 관계) 시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 우선 원칙에 근거해 국가, 도·군·구 등(앞으로, 국가 등)과 적절한 정부간 관계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관계 단체, 시민, 사업자 등과 연대 협력하여 자치기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37조(다른 자치단체 등과 연대) 시는 다른 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행정 서비스, 시설의 상호 이용, 공동 과제에 대한 광역적 대응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38조(해외 자치단체 등과 연대, 국제교류 추진) 시는 해외의 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 활동 단체 등과의 연대,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시민 차원의 공공적인 국제 활동을 지원하여 상호이해의 촉진, 공동된 도시문제에 대응 그리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지구 규모의 제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 ③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제 4 차 회 의 자 료



2011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항

연번	개선과제	비 고
1	연간회의일수 및 정례회 운영의 개선	
2	특별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개선	
3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중 서면답변서 포함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 개선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필요
5	전문위원 관련 규정 개선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필요
6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개선	
7	시정질문 처리결과의 보고	
8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마련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필요
9	위원장의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 인정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필요
10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자율화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필요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지방의회 제도개선 사항

연번	개선과제	관련법규 개정 여부
11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
12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구성	정치자금법 제6조 등 개정
13	지방의회 의정비책정의 자율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개정
14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1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제91조 등 개정
1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개정

1

연간 회의일수 및 정례회 운영의 개선

□ 연간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기간 조정

■ 검토배경

- 개혁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1.2.21)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됨
 - ① 연간 회의 총일수(현행 140일 이내) 적정성 여부
 - ② 정례회의 회기일수(현행 60일 이내) 적정성 여부
 - ③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현행 2차 정례회)의 조정 여부

① 연간 회의 총일수의 조정 검토

- 현행 140일 이내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안)
 - 연간 회의 총일수 삭제(안) : 연간 회의 총일수 규정의 삭제
 - 연간 회의 총일수 상향조정(안)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40일 이상으로 확대
 - 현행(안)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40일 이내로 유지
- 검토의견
 - 연간 회의 총일수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같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회의 총일수를 삭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으며, 회의 총일수를 14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 시·도의회별 연간 회의 총일수 비교

시·도	연간 회의 총일수	시·도	연간 회의 총일수
서울	140일 이내	강원	130일 이내
부산	130일 이내	충북	120일 이내
대구	140일 이내	충남	120일 이내
인천	140일 이내	전북	130일 이내
광주	140일 이내	전남	120일 이내
대전	120일 이내	경북	130일 이내
울산	120일 이내	경남	140일 이내
경기	140일 이내	제주	130일 이내

② 정례회 회기의 조정 검토

- 현행 60일 이내
- 관련 규정

<p>■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p> <p>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p>
<p>■ 지방자치법</p> <p>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지방자치법 시행령</p> <p>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p>

○ 검토(안)

- 정례회 회기 상향조정(안) :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상으로 확대
- 현행(안) : 정례회의 회기를 60일 이내로 유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7월 중, 제2차 정례회는 11·12월 중 개최해야 하는 바, 정례회는 60일 이내 개최하는 것이 타당함.

※ 참 고 : 시·도의회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비교

시·도	정례회 회기(2회)	임시회 회기(회기당)
서울	60일 이내	20일 이내
부산	55일 이내	15일 이내
대구	60일 이내	20일 이내
인천	70일 이내	20일 이내
광주	60일 이내	15일 이내
대전	60일 이내	20일 이내
울산	55일 이내	15일 이내
경기	60일 이내	20일 이내
강원	60일 이내	20일 이내
충북	50일 이내	15일 이내
충남	52일 이내	15일 이내
전북	52일 이내	15일 이내
전남	55일 이내	-
경북	55일 이내	15일 이내
경남	60일 이내	15일 이내
제주	60일 이내	20일 이내

③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

- 현행 제2차 정례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검토(안)

- 제1차 정례회 개최(안) :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 현행(안) :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검토의견

- 집행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며, 연간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성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가 가능하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정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현행(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 : 시·도의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비교

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 조례
서울	제2차 정례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전	제2차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	제2차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북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제2차 정례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북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남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경북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남	제2차 정례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	제2차 정례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특별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개선

□ 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규정 마련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존속기간 구체적인 명시

-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활동기간이 모호하여 각 지방의회별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함.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까지 존속하되,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

○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명시

- 기존 '활동보고서'를 '활동결과보고서'로 명시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시 중간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 의회에 설치·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의 남설을 막고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유도

□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제10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중간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중 서면답변서 추가**

□ **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사항 보완**

○ **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기재사항에 ‘서면답변서’ 추가**

- 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에 서면질문과 답변서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에는 제외됨
- 위원회 회의의 기록으로서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의사 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비교**

본회의(회의규칙 제46조제1항)	위원회(회의규칙 제62조제1항)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설명 및 수 5.출석공무원 직과 성명 6.위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제반보고사항 8.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사 11.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서면질문과 답변서 13.위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성명 4.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전명 7.의사 8.표결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전명	6. 심사안전명
7. 의사	7. 의사
8. 표결수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서면답변서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 미비

-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절차의 간소화 필요

- 조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문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특위구성 일반적 방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
- 다만,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수행할 경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의 검토 필요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선행되고 난 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구성, 처리함이 타당함.(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0.9.4)

□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사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조사요구서에는 위원수 및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전문위원 관련 규정의 개선

□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업무 개선

○ 전문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의안의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도입 필요
- 국회 경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와 명의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가능(국회법 제42조제5항)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의 검토 필요

-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자료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및 규칙에 전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전심의회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아닌 전문위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행안부 질의응답 2009. 8. 4)

□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5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 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6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개선

□ 회기 운영의 예측가능 및 계획적인 운영 도모

○ 시의회 상시개원을 위한 연간 운영기본일정 개선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규정으로 검토
-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 및 집행부의 의회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시의회 연간 운영기본일정 중 임시회 운영기본일정의 기준 제시함.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연간 시의회의 상시개원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회기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한 신속적인 의회환경에 따른 회기운영이 어려워짐.

□ 추진방향

○ 국회법 등의 관련 규정 검토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시 특정 월, 일에 개최하는 방안 도입

□ 관련 법규

○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 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7 시정질문 처리결과에의 보고

시정질문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처리결과 보고

○ 집행부의 책임있는 시정운영 유도

- 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요구하는 시정질문 제도는 그 처리결과가 규정되지 않아, 효과적인 시정질문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0조의2(시정질문) ① (생략)	제70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회의규칙

제70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3.3.10)

⑥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원위원회 제도 도입 검토

○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 심화 추진

-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도입하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해 민감한 내용을 함께 토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서울시 조직에 관한 조례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제·개정할 때 시의원 발의로 전원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의 검토 필요

- 국회 경우, 전원위원회 제도는 의원들에게 의안심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2000.2.16)을 통해 도입됨
- 다만, 지방의회의 전원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설치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함)

□ 관련 법규

○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

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2005.7.28>

⑥ 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9 위원장의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 인정

폐회 중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권 도입

○ 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 활성화 유도

-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규정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 필요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동 조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관련 법규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필요

○ 감사시기와 기간 한정으로 견제기능약화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게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그 시기를 정례회로 한정함.

○ 획일적 규정으로 자치단체 특성에 부적합

- 우리나라의 각 지방의회는 그 의정여건과 상황이 다른 바 획일적으로 정례회 기간 중 시·군 및 자치구는 7일 이내로 시·도의 경우는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기간과 시기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 필요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 **관련 법규 개정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p> <p>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u>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u>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 시행령〉</p> <p>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u>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u>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p> <p>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u>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u>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 시행령〉</p> <p>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u>(삭제)</u></p>

□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도를 도입

○ 지방의원 지원제도 미미

- 지방자치 부활이후 매년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양적, 질적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지원제도는 발전하지 않고 있음
- 유급제실시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현저히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의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를 금지하고 있고, 변형된 의원보좌관 제도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

- 지방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고,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적 정책의회로 위상을 정립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설치하도록 함.

□ 관련 법규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
	〈신설〉

12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대응성을 높이는 후원회 제도 도입

○ 의정활동 범위의 한계

-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의정활동의 범위를 위축시키고 있음.

○ 타 선출직과의 차별

- 지방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의정활동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제도, 교통비, 후원회제도 등에 있어 국회의원과 차별적인 법적용을 받고 있음.

관련 법규 개정안

○ 정치자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생략) <u>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u>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생략) <u>2. 국회의원 및 시·도지방의원(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방의원선거 당선인을 포함한다)</u>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정비책정의 자율화

○ 지방의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의정비 책정

-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식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존중 필요

- 헌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이런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변수를 이용한 산식으로 지방의원의 월정수 가이드라인을 산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음.

□ 관련 법규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1.~2. (생략)	1.~2.(현행과 같음)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 지방의회 견제 감시기능의 미비

○ 순환보직 인사로 견제기능의 약화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경우는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나, 일반직의 경우는 집행부로 돌아가는 순환보직이다 보니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지방의회의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의회직렬이 신설 될 경우 인사교류 제한, 승진 및 보직관리상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어 21여개의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 관련 법규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생략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1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 위상제고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투자·출연기관을 설치 운영중인 바, 이 기관장 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용하여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공사·공단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협조가 없는 의견청취 실시 한계가 있음.

- 인사청문회(인사청취)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동의 필요
-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인사청취) 실시를 위하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 협조 필요

□ 관련 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첨자료 ④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제 5 차 회 의 자 료



2011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서울시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은 체계의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민주적인 시의회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의 조례안 제출계획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는 서울시의회의 혁신적이며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해야 하는 것을 서울시의회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의회는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

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선 노력을 의정활동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으로서,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의원 간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에게 조례안 제출계획과 변경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서울시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그와 같은 검증보고서가 작성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시장은 인사검증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말한다.
5. “시”는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6. “법”, “영”은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6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

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8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10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6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의 원

제22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

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위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0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재정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건설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제34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 가.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 아.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 가.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맑은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복지건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건설위원회

- 가.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 시설안전기획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전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하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윤리 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

의하여 정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전원특별위원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8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9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시장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시장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할 경우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본 조에서 “인사 검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인사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사검증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0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
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등의 운
영,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첨자료 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제 6 차 회 의 자 료



2012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 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정

□ 위원회 제도의 의의

○ 의회의 내부기관, 합의제기관, 예비심사기관

- 의원 중 일부를 위원으로 선임·구성하는 의회 내부기관
-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합의제기관
- 본회의 보고 및 판단자료 제고를 위한 예비적 심사기관

○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심의능률 향상, 전문성·기술성 제고, 회의운영 자율성 부여

구 분	내 용
심의능률의 향상	본회의에 한정된 의안 심사시, 이에 따른 질의 또는 토론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신속한 의사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한정된 회기 내에 안건을 처리하고 심의능률을 향상시킴.
전문성과 기술성의 제고	현대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안건 심의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하게 하면 문제를 보다 깊이 파헤치고 심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
회의운영의 자율성 부여	본회의는 회의의 능률적 운영측면에 있어, 발언자의 수, 발언시간, 발언회수 등에 제한이 되는 바, 위원회제도의 운영을 통해 능률적인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철저한 토의가 가능하며 의견 일치점을 찾기 쉬움.

2

각 시도별 상임위원회 구성 비교

□ 시·도의회별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	상임위원회	상임위 수	의원 정수	상임위당 의원수
서울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10	114	11.4
부산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	7	53	7.6
대구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6	34	5.7
인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6	38	6.3
광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5	26	5.2
대전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5	26	5.2
울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5	26	5.2
경기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경제위원회, 행정위원회, 문광위원회, 농림위원회, 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위원회, 여가평위원회, 교육위원회	11	131	11.9
강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6	47	7.8
충북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6	35	5.8
충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6	45	7.5
전북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6	43	7.2
전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행정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7	62	8.9
경북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7	63	9.0
경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7	59	8.4
제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7	41	5.9

□ 각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특징

○ 상임위원회의 명칭 유사

- 각 시·도 집행기관의 실·국 기능이 대동소이하게 구성됨

○ 상임위원회 수는 전문위원(4급) 정수기준과 일치

- 의회에 두는 위원회 수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와 대체로 동일

※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정수기준 비교

구분	의원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4급) 정수기준 (교육위 포함)
서울	114	10	11
부산	53	7	7
대구	34	6	6
인천	38	6	7
광주	26	5	6
대전	26	5	6
울산	26	5	6
경기	131	11	12
강원	47	6	7
충북	35	6	7
충남	45	6	7
전북	43	6	7
전남	62	7	8
경북	63	7	8
경남	59	7	8
제주	41	7	7

- 일부 시·도의 경우 단일실국을 2개 상임위 소관으로 지정 운영
 - 위원회 소관 지정 기준은 기관별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 기능별 배치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단일 실국의 복수 상임위 소관 조정 운영(서울·경기도의회)
- ※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관 분리운영 사례

실국	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기획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행정위원회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경제위원회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농림위원회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복지위원회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여가평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3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소관 기준

□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 근거법령 : 국회법 제35조
- 국회 상임위원회 수 : 총 16개 상임위로 구성
- 국회 상임위원회의 특징
 - 상임위원회는 주로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하여 분리·구성
 - 행정부처와 병립·조직되어 있으며, 소관영역별로 전문화됨
 - 정부기구 개편이나 국가기관 설치·폐지에 따라 국회법 개정

□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황

- 16개 상임위에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 지정

상임위원회	소 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장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4 해외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 서울시의회와 주요 도시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

구분	서울시의회	동경도의회	뉴욕시의회	런던시의회
상임위원회수	10개	10개	37개	11개
평균 상임위원수	11.4명	15명	7.5명	7.7명
소관업무배정	집행부조직	집행부조직	정책의제중심	정책의제중심

□ 동경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소관 현황

○ 집행기관 조직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구성 · 운영

위원회명	소관 사항	의원 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총무위원회	지사본국, 청소년·치안대책본부, 총무국, 인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동경올림픽유치본부, 감사위원 기타에 관한 사항	15
재정위원회	재무국, 주세국, 회계관리국, 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문교위원회	생활문화스포츠국,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도시정비위원회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	14
후생위원회	복지정비국, 병원경영 본부에 관한 사항	14
경제·항만위원회	산업노동국, 중앙도매시장, 항만국, 노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환경·건설위원회	환경국, 건설국에 관한 사항	14
공영기업위원회	교통국, 수도국, 하수도국에 관한 사항	14
경찰·소방위원회	공안위원회(경시청), 소방청에 관한 사항	14

5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안)

□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현황

○ 10개 상임위에 서울시 본부·실·국 및 산하 기관 지정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자치 위원회	감사관, 비상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 사항
재정경제 위원회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정보화기획단, 교육협력국, 농수산물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시립대학교
환경수자원 위원회	공원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 도시안전실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
보건복지 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실,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 재단
건설 위원회	도시안전실 사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관리 위원회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에스에이치(SH)공사
교통 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방송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
교육 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임위 소관 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방향

〈필요성〉

- 상임위원회의 견제기능 활성화
 - 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전문적이며 효과적 견제 임무 수행
- 각 상임위원회별 균형있는 집행부 실·국 배분
 - 행정기구의 업무와 대응하는 상임위 기능과의 연계성 강화
- 이원화된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정비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의회에서만 과단위 조직으로 분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운영

〈개편방향〉

- 상임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소관 조정
 - 상임위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관 조정으로 추진
 - 본부·실·국 및 산하 기관의 수를 고려한 상임위 소관 조정
- 본부·실·국 중심의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 집행부 부서장이 하나의 상임위원회만 대응하도록 소관 조정
 - 국회 및 타 시·도의회는 기관중심 상임위 소관 조정

□ 중점검토사항

1. 단일 실·국을 과단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로 소관 지정한 사항의 개선 필요

〈문제점〉

- 집행부 실·국의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조정의 곤란
- 집행부 실·국의 사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가능하나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파악에 있어 곤란

〈현 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분리·운영되어 있음

실·국	과	소관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시책사업추진단	건설위원회
	도시철도국	교통위원회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설안전정책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건설위원회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	교통위원회

〈개선방안〉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및 집행부 조직 분담을 고려하여 현행 복수 상임위 소관지정사항을 개선하여 1본부·실·국의 단일 상임위원회 소관지정으로 조정함

2. 조직의 기능확대 및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필요

〈교통방송〉

- 라디오, 텔레비전 및 SNS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교통방송의 역할과 기능 확대 예상
- 방송의 영역이 교통정보제공에서 교양·문화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종합정보채널로서 기능 확대
- 현행 교통위원회의 소관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서울혁신기획관〉

- 현행 시장실 산하 조직 중 하나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인권 등 서울시정의 핵심업무 담당
- 업무 중요도 및 다양성을 고려한 적정 상임위원회 지정 검토

3.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소관지정 효용성 검토

- 현행 운영위원회로 소관이 지정 되어있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부서라기보다 시장 개인의 일정과 의전 등 정무적 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 편성도 부서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 가. 경제진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 아.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 가. 공원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도시안전실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복지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건설위원회

- 가. 도시안전실 사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재경위원회
 - 가.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산업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보사환경위원회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복지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가. 창조도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가.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낙동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 대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첨단의료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

4. 경제교통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5. 건설환경위원회

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다. 환경시설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위원회

-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마. 인천메트로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바.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자치행정국, U대회지원본부, 소방안전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소방서, 시립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 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건설위원회

- 가. 도시디자인국, 교통건설국,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소관에 관한 사항
-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교육기관 및 지역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엑스포 과학공원
 - 나.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 3.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 4.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산업국,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 5.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공보관·감사관·기획관리실·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국·소방본부·소방서·서울사무소·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3.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태화강관리단·클린울산추진단·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및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4. 산업건설위원회
 - 가. 경제통상실·교통건설국·도시국·농업기술센터·종합건설본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지방경찰청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소관에 관한 사항
 - 마.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 바.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 5.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2. 기획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감사관,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방공기업(다만,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과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라. 경기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경기도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경제투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경제농정국 사무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행정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행정실 사무 중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과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

바.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광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림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경제농정국 사무중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도수산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복지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실 사무 중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의 서무팀·미생물검사팀·식품분석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대변인실 소관에 관한 사항

8. 건설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철도항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도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도시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환경국과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환경연구부, 북부지원의 대기화학팀·수질화학팀·먹는물 검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여가평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실 사무중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2)부지사 소속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교육위원회

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방본부,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나.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사회문화위원회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림수산위원회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 강원도립대학,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건설위원회

산업경제국, 투자유치사업본부, 건설방재국, 국제협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여성정책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벨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홍보협력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청양대학,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수산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실, 농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건설교통항만국,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방안전본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규정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실·행정지원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관리실·대외소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여성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민생일자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략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국·기획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법무담당관실·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사회위원회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환경위원회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녹색성장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종합민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전남도립대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가. 투자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F1대회지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 가. 건설방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전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산위원회
 - 가. 농림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가.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공보관실·감사관실·행정지원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독립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교육위원회

라.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해양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환경위원회

가. 동남권발전국·경제통상국·청정환경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경남무역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시방재국·건설사업본부·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관광체육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마산·진주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남지방경찰청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업무 제외)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청정환경국 소관업무 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 마.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 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 아.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차.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 카.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